

울산광역시중구 전통시장 물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 |
|----------|-----|
| 의안 번호 | 876 |
|----------|-----|

발의연월일 : 2011. 12. .

발의자 : 김지근 · 신성봉 · 이효상 · 김영길 · 황세영 · 권태호
정현희 · 김순점 · 서경환 · 고호근 의원(10명)

1. 제정이유

- 중구 관내 16개의 전통상가가 많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 중구발전과 전통시장 발전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구청은 물론 소속기관, 단체에서 전통시장 물품을 우선 구매·촉진은 물론 분위기 확산으로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 물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 공공기관은 중구, 소속기관 및 단체 등 적용범위(안 제3조)

다. 물품구매계획, 추진체계, 교육·홍보, 유통지원에 대한 실적과 수범사례 등 중구 뉴스 및 홈페이지 등에 구매실적 공포(안 제5조, 제6조)

라.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에 정한 시장에서 판매하는 생산품으로 준용하는 구매의무 범위와 산·학 협력 및 기술지도 사업 등 일부비용 지원 (안 제7조, 제8조)

마. 공공기관, 단체, 학교법인 등에 전통시장 물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구매증대 협조요청(안 제9조)

바. 전통시장 물품 구매실적 반영평가 및 구매촉진 시책 수립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 등(제10조, 제11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근거법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울산광역시중구 전통시장 물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 물품"이라 함은 「울산광역시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규정하여 설립된 시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울산광역시중구청 및 소속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3. "상인회"라 함은 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전통시장 생产业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울산광역시중구청, 소속 기관 및 단체이다.

제4조(우선구매촉진)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전통시장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제5조(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해 2월말까지 전통시장 물품을 구매촉진 하기 위하여 해당년도의 물품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 이행계획 및 시책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통시장 물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2. 전통시장 물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전통시장 물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

제6조(구매실적의 공포)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통시장 물품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에 대하여 중구 뉴스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시장 물품 판매, 유통지원에 대한 실적
2. 전통시장 물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 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3. 전통시장 물품 구매 전후의 상인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 등

제7조(구매의무 범위) 전통시장 물품 구매의무 범위는 「울산광역시중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 조례」에 정한 시장에서 판매하는 생산품으로 준용한다.

제8조(비용지원) ① 구청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산·학 협력 및 기술지도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전통시장 물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구매증진 협조 등) 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중구에 소재한 기관, 단체, 학교 등에 전통시장 물품의 우선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매 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전통시장 물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전통시장의 판매제품 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물품 우선구매제도,

품질에 관한 자료 등을 상인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상인회에서는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물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 등)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항목에 전통시장 물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한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전통시장 활성화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876)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 전통시장 물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2. 심사경과

- 제안연월일 : 2011. 12. 01(목)
- 제안자 : 김지근 의원 외 9명
- 위원회회부 : 2011. 12. 05(월)
- 위원회심사 : 2011. 12. 15(목)

3.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검토보고서로 대체)

가. 제안이유

- 중구 관내 16개의 전통상가가 많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 중구 발전과 전통시장 발전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구청은 물론 소속기관, 단체에서 전통시장 물품을 우선 구매·촉진은 물론 분위기 확산으로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전통시장 물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 적용 공공기관은 중구, 소속기관 및 단체 등 적용범위(안 제3조)
- 물품구매계획, 추진체계, 교육·홍보, 유통지원에 대한 실적과 수법사례 등 중구 뉴스 및 홈페이지 등에 구매실적 공포 (안 제5조, 제6조)
-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조례에 정한 시장에서 판매하는 생산품으로 준용하는 구매의무 범위와 산·학 협력 및 기술지도 사업 등 일부 비용 지원(안 제7조, 제8조)
- 공공기관, 단체, 학교법인 등에 전통시장 물품의 우선구매 촉

진을 위하여 구매증대 협조요청(안 제9조)

- 전통시장 물품 구매실적 반영평가 및 구매촉진 시책 수립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 등(제10조, 제11조)

4. 근거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5. 검토의견 (전문위원 김영호)

- 관내 전통시장 상권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물품 등을 구청은 물론 소속기관 및 단체 등에서 우선으로 구매·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지근 의원을 비롯한 10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 우리구 관내 전통시장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공공기관 등에서 우선구매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인 만큼 원안의결 함이 가능 것으로 사료 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